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헌법소원 청구인 신청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및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헌법소원 소송 대리인단'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소송대리인단을 구성하고 국가의 실효적 조치를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의 해양 투기를 우려하는 모든 국민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23. 8. 7.(월)까지)

* 표시는 필수사항임

1. 성명 (법적 이름)*
2. 주소 (주민등록상 주소)* 예) 서울 XX구 000로 46, YY아파트 101동 101호
3.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6자리로 표기)* 예) 880528
4. 연락처(휴대전화번호)* 예) 010-1234-1234
5. 이메일(선택사항)
6. 직업*
 - 어업 관련 종사자 (양식업, 어부, 해녀, 횃집 등 경영자/종사자, 해양 스포츠 강사, 선박 승무원 등)
 - 기타(일반 시민 등)
7.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로 인해 직접 겪었거나 겪고 있는 피해사례가 있다면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변호인단의 변론과정에 참고할 예정입니다.

★ 소송 비용(1만 원)을 납부해야 소송에 참여하는 것이 확정됩니다. 입금자명을 반드시 확인하고 입금해주세요.*

* 납부 계좌 : 농협은행 317-0013-1351-41(예금주: 법무법인 자연)

* 입금자명 : 본인이름(단체, 개인)(예: 김민주(민변))

★ 예, 확인하였습니다. (서명)

위임계약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위임 계약서]

- 위임인: 청구인
- 수임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헌법소원 소송 대리인단(단장 김영희 변호사 등)'
-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헌법소원을 함에 있어 청구인(이하 '위임인')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헌법소원 소송 대리인단' 소속 변호사들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아래와 같이 위임한다.

제1조(위임사무) 위임인은 위 사건에 관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결정에 이를 때까지 소송대리사무를 수임인에게 위임하고, 수임인은 위임인의 위임 취지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기로 약정한다.

제2조(소송비용 및 착수보수) 위임인은 수임인에게 본 소송위임장 작성과 동시에 소송비용 및 착수보수로 금 일만원 (₩ 1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한다.

제3조(수권사항) 모든 소송행위 및 필요한 입증자료 수집과 관련된 행위

제4조(인장조각) 수임인이 위임계약의 수행 상 필요한 경우, 수임인은 위임인 또는 당사자의 인장을 조각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5조(비밀유지) 수임인은 업무상 취득한 위임인의 모든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업무수행 상 필요하거나 법적으로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 이외에는 위임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한다.

✦ 위 위임계약 내용에 동의합니다. (서명)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핸드폰, 이메일), 주소 등 위 작성사항 일체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헌법소원 소송 진행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판결 확정 시로부터 6개월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서명)